

2015.6.10

'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' 일부 개정 안내

1. 개정이유 및 시행일자

● 개정이유

-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절차를 정비하며, 태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원당(原糖)에 대하여 상호적으로 협정관세율을 적용.
-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활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수정통보하는 경우의 첨부서류를 간소화.
-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.

● 시행일자 : 15. 6. 5. (금)

2. 개정내용

1.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개선

▶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

- ① 조사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
- ②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,

지금까지는 먼저 서면조사를 하고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, 앞으로는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에 앞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.

2015.6.10

2.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 절차 간소화

- ▶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·제출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**절차적 부담을 완화**하기 위하여,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물품의 **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세관장에게 통보하는 경우**에 수정된 **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함.**

3. 협정관세율표의 정비 등

- ▶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인 태국이 원당에 대한 관세율을 0(零)퍼센트로 인하함에 따라, **태국을 원산지로 하는 원당**에 대하여 상호적으로 「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」에 따른 **협정관세율 (0퍼센트)을 적용함.**